

포항공과대학교 기업협업센터 운영 지침

2023.01.21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「포항공과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(이하 “사업단 운영 규정” 이라 한다)」 제6조 제4항에 따른 포항공과대학교 산학연 특화 분야 기업협업센터(ICC: Industry Cooperation Center)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 및 역할) 센터는 기술혁신형 산학연협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산학연협력을 위한 특화분야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
2. 대학·기업·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산학연협력생태계 구축 및 확립
3. 산학연 보유기술의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 선도형 체계구축 및 운영
4. 특화 분야별 우수인력 확보와 기술교류를 위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운영 사업
5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 - 가. 산학공동기술과제 지원
 - 나. 미래기술연구회(POSTECH Global Working Group) 지원
 - 다. 가족회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 - 라. 센터의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원 등

제3조 (조직) 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 LINC3.0 사업단 내에 두고, 특화 분야별로 차세대 ICT, 바이오·헬스, 첨단 소재, 미래에너지, DX+ 첨단제조의 총 5개 센터(ICC)로 구성된다.

② 각 센터별로 센터장 1인을 두고, 센터장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의 임기는 총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되, 센터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의 장은 센터장을 교체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센터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운영
3. 센터의 운영 실적 보고 및 성과 공유·확산 등

④ 센터는 센터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과제의 운영을 위해 심의·평가위원회, 과제선정평가단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 내 관련 지침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평가,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, 특화분야별 참여학과 교수, 외부 인사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ICC 센터장이 겸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경우 해당 보직의 임기와 같이하고, 그 외의 경우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.

제5조(재정)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은 LINC3.0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산업체 지원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,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사업단 운영규정 및 대학의 연구비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된다.

② 센터의 센터장 및 임명직 위원,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교원 등에 대하여 센터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(자문료 등)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〈부칙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.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수행하는 LINC3.0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 폐지된 것으로 본다.